

대법원 2023. 1. 12 선고 2022다28897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

대한민국

피 고

오AA 외 2명

판 결 선 고

2023. 1. 12

주 문

1.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2.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,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

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,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○○○